

환경분쟁위, 조정사례

■ 항공학교 헬기훈련 소음피해 (00-3-58)

▲ 사건개요

사슴 목장주가 항공학교 헬기 훈련소음으로 인해 사슴이 폐사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사슴목장 이전비, 폐사로 인한 재산피해 및 정신적 피해 등으로 총 7억6천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 결정내용

사슴의 야생 습성, 헬기운행 빈도, 소음도, 수의사 검진내용 및 인근 양돈농가의 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헬기소음으로 인한 사슴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국가는 신청인에게 죽은 사슴(엘크 및 꽃사슴) 12마리에 대한 피해액으로 2천413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피해지역에서 헬기훈련이 시작된 지 5년이 경과한 지금도 신청인이 20두 이상 규모로 사슴목장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의 사슴들이 헬기소음에 적응하여 건강하므로 사슴목장을 이전해 달라는 신청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유

신청인은 '88. 9월경부터 집 뒤 언덕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사슴을 방목하여 왔으나, '95년 겨울 육군항공학교가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여 헬기훈련을 시작한 후부터 그 소음으로 사슴 폐사, 유·사산, 녹용 생산량 저하 및 성장 지연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헬기훈련이 계속되는 한, 현 위치에서 사슴목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방부는 사슴목장 이전비, 폐사로 인한 재산피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총 7억6천3백 5만 2천5백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소형헬기 비행 고도를 더 높이 조정하고, 신청인의 축사상공에서 선회하던 항로를 축사지역을 회피하도록 연장 수정하였으며, 중형헬기의 항로를 변경하는 등 소음을 줄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그 개연성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는 단기간이 아닌 1

년 이상의 전문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하며, 사회 통념상 수인의 한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법정부 차원의 관련대책 및 정책조정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군에서도 자체적인 소음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도의 공익적 측면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결과, 관계전문가 의견, 관련문헌 자료 및 양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충남 ○○시 ○○면 ○○리 3구 490-○번지 일대로 농가주택 20~30가구가 밀집되어 있다. 신청인의 사슴 목장은 육군항공학교 서쪽방향에 위치하고 있고 활주로로부터 약 1,500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공주-논산 간 준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신청인 목장은 소형헬기(500MD) 항로 선상의 이착륙 구간에 위치해 있고, 항공 훈련 중에는 헬기가 1~2분 간격으로 목장 상공을 지나가며, 중형헬기(AH1)도 목장 북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수시로 볼 수 있다. 특히, '00.5.8일 헬기 항로를 연장하기 이전에는 소형헬기가 신청인 목장 위 상공에서 선회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육군항공학교 현황

육군항공학교는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 제2항 제1호 규정과 국방부 일 반명령 제23호('55.2.1)에 의해 '55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육군본부 교육사령부 예하기관으로 조종사와 정비사 양성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학교는 '95년 말에 조치원비행장에서 논산비행장으로 이전하였다. 논산비행장은 학교가 이주하기 전에도 훈련기자로 활용되어 왔으나, 학교를 이주하면서 계류장, 주활주로, 보조활주로 등을 새로이 건설하여 비행항로를 변경(활주로 방향: 당초 남서→북동, 변경 동→서)하였다. 변경된 비행항로로는 '96년 1월부터 훈련을 시작하였다. 학교의 주요 시설로는 활주로, 계류장 이외에 모의비행훈련실(SFTS: Symthetic Flight Training System), 강의동 및 숙소 등이 있다.

학교는 비행훈련을 방학 없이 연중으로 하고 있으며, 항공기 기종과 분산 비행 훈련 방침에 따라 논산비행장과 연기비행장 등에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실내 비행훈련시설에서 모의비행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비행시간은 통상 08:30~16:45(점심시간 제외)에 하고 있으며, 훈련 병의 야간의무비행시간과 기상상태에 따른 보통 교육 등으로 때때로 야간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사슴 목장 현황

(1) 일반현황

신청인은 지금의 장소에서 '84년도에 1~2마리를 사육하기 시작하여 '88년도에 사업자로 등록을 하였고, '99. 8월 교편생활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사슴을 사육하고자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슴목장은 신청인 주택 바로 뒷편에 약 5만m²에 위치해 있으며, 비가리개식 사슴장 2개와 약 8000평 규모의 방목

특집

사슴과 소음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방목장은 철조망 울타리를 이용하여 3개로 나누어 개떼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방목하는 범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곳은 의령남씨의 종산으로 신청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택은 신청인의 소유로 대지 100평, 건물연면적 39평의 2층 연와조 스라브 구조로 되어 있으며, '82년도에 준공되었다.

3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에서 사슴들이 방목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 사육중인 사슴의 품종별 마리수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웠고, 목축된 사슴은 20여마리를 해아릴 수 있었다.

(2) 관리실태

목장을 신청인 혼자서 관리하고 있으며, 방목을 하므로 사료를 공급할 때에는 종을 쳐서 사슴이 먹이를 먹도록 하고 있다.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농후사료, 조사료 및 건초 등의 먹이를 맘껏 먹을 수

있도록 주었으며, 구충약은 1년에 2회 사료에 타서 주었다.

목장은 비교적 조용한(이 지역 암소음 50~57dBA) 농촌마을에 위치하고 있고, 사육도 집약사육시설이 아닌 넓은 땅에서 방목을 하고 있어서 헬기 소음을 제외하면 사슴 사육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슴의 녹용과 녹혈 채취는 소비자가 방문할 때마다 수시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육군항공학교 헬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 사례

육군항공학교의 헬기 항로 부근에는 다수의 돈사와 우사가 있으며, '96년도와 '97년도에 신청인 목장 인근의 양돈농가 4가구(양OO, 강OO, 이OO, 이OO)가 1~2회에 걸쳐 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로 부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은 바 있다. 피해배상은 돼지의 유·사산 및 불임에 대한 피해액이다.

육군항공학교 헬기소음으로 인한 국가배상 현황

사건번호	신청인	주 소	배상 내 역
'97년 제207호	양OO	00면 00리 463-4	3,686천원 지급 (97.1.1~6.30)
'97년 제208호	강OO	00면 00리 463-7	1,877천원 지급 (97.1.1~6.30)
'97년 제209호	이OO	00면 00리 466	1,014천원 지급 (97.1.1~6.30)
'96년 제1호	양OO		5,929천원 지급 (95.11~96.1)
'96년 제2호	이OO	00면 00리 466	2,294천원 지급 (95.11~96.1)
'96년 제3호	이OO		4,469천원 지급 (95.11~96.1)
'96년 제4호	강OO		3,991천원 지급 (95.11~96.1)

항공학교에서는 위 사례가 중형헬기로 인한 피해이며, '98. 1월 중형헬기 항로를 4각 장주에서 5각 장주로 변경 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신청인을 제외한 민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전문가 의견

가. 헬기소음도 측정 및 평가

- 조사일시 : '01. 2. 27 13시~16시
- 헬리콥터 주기종 : 500MD, AH1
- 운행회수 : 1~2분 간격으로 상공 통과, 84회 운항
- 사슴목장 상공 통과시 소음도
 - 최고 소음도 평균값 : 73.7dBA
 -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 70
- ※ 항공기소음영향도 산정에 적용한 운행회수는 위원회에서 조사한 운행빈도 보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00.4.20)한 회수가 높으므로 그 값을 적용하였다. 즉, 낮시간(09:00~16:30) 167회, 저녁시간(19:30~20:40) 12회를 적용하였다.

나. 사슴 폐사 원인 추정

사슴의 특성상 헬기소음이 사슴 폐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양관리의 잘못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01. 4월 현지조사 당시 사슴들의 건강 상태는 별이 상이 없었으며, 그동안 항공기 소음에 적응된 것으로 보아 현재의 사슴들을 신청인 목장에서 사육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용한 곳에서 사육하던 사슴을 입식할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인과관계 검토

가. 헬기소음으로 인한 사슴 폐사 여부

전문가에 의하면, 사슴은 다른 가축보다 야생습성이 많이 남아 있어서 낮선 소음이나 물체 등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 사슴장을 뛰어 다니거나 사슴장 주위를 배회하며 흥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1~2분 간격으로 헬기가 사슴목장 상공을 지나가고 있고, 때때로 야간비행도 하고 있으므로, 항공 학교 비행 훈련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사슴사육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또한, 3차례에 걸친 수의사 검진 또는 부검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소화기 장애 등을 기술하고 있고, 항공학교 인근의 돼지사육농가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음을 볼 때, 헬기소음이 사슴 폐사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은 더욱 확실해 진다.

아울러, 신청인은 사슴을 넓은 야산에 방목하고 사료도 충분히 주는 등 사양관리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헬기소음 이외에 사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다른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위에 열거한 정황으로 보아 헬기 훈련 소음으로 인한 사슴 피해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나. 정신적 피해 여부

신청인은 사슴폐사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만성위염)와 가정불화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배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만성위염 증세는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갖는 증상이기 때문에 헬기소음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로 볼 수 없다.

항공법에 의하면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5이상인 지역은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90이상인 지역은 공항

소음피해지역으로, 80이상인 지역은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항공기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항공기소음의 한도를 80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감안하여 볼 때, 분쟁지역의 소음도(70WECPNL)는 신청인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인 것으로 보인다.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재산상 손해의 전보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 고 보아야 한다는 관례에서도 정신적 피

해 배상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 사슴목장 이주의 필요성 여부

현재 사육중인 사슴들은 소음에 적응하여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보이며, 육군항공학교 헬기훈련이 시작된 지 5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사육두수 20여 마리의 규모로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현재 위치에서 사슴을 사육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주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추정된 폐사슴 내역

(단위: 두)

품종	년도	성별			확인내용 및 추정된 폐사수
			폐사수	폐사슴 처리방법	
엘크	'96	암컷 수컷	2 2(사산1포함)	녹용판매1, 부폐1 녹용판매1, 중탕(본인소비)1	- 96양록 축산협동조합에 녹육수매 2
	'97	암컷 수컷	1 -	중탕(본인소비)	- 97~'99 중탕처리
	'98	암컷 수컷	- -		- 99 강정식(중계상)을 통해 무상처리 5
	'99	암컷 수컷	3 6	중탕(본인소비)1, 부폐1, 강정식 무상처리1 소각2, 강정식 무상처리4	-현지조사확인 : 부폐1
	'00	암컷 수컷	3 3	매몰1, 소각2 매몰2, 소각1	-수의사 진단서 : 폐사예측2, 부검1
꽃사슴	'99	암컷 수컷	- -		
	'97	암컷 수컷	- -		
	'98	암컷 수컷	- -		-현지조사확인 : 매몰2
	'99	암컷 수컷	8(자록4포함) 1(자록)	소각, 매몰8 소각, 매몰1	
	'00	암컷 수컷	14(자록10포 함) 5(자록)	소각, 매몰14 소각, 매몰15	
계			5(자록)	48	15('97.10.25이후 12)

4. 배상결정

가. 손해배상 적용기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00. 10. 25일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기간을 시효 중단일에서 3년을 소급한 '97. 10. 25일부터 적용한다.

나. 사슴 폐사수

신청인은 폐사한 사슴 48두에 대한 사슴 사육관리대장, 거래증빙자료 또는 관련 영수증 등을 비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사습 처리에 대한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신청인이 제시한 "폐사처리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진술과 현장 확인결과 등을 참조하여 죽은 사슴 규모를 추정하였다.

헬기 소음으로 죽은 사슴 수는 총 15두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97. 10월

이전에 폐사한 3두를 제외하면 배상대상이 되는 죽은 사슴은 12마리(엘크 암컷 3두, 엘크 수컷 7두, 꽃사슴 2두)이다.

다. 폐사습 생산물

○ 폐사습 생산물에 대한 배상은 죽은 사슴에 대한 배상과 중복되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 배상액

○ 죽은 사슴의 단가는 한국양특협회에 조회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평균값으로 하고, 사슴연령(성록과 자록 구분)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2,413만원이 된다. 단위: 원

(만 원: 두)

품종	성별	연령	연도	폐사두수	적용단가	배상금액
엘크	암컷	성록	'99	3	180	540
		성록	'99	1	475	475
	자록	자록	'99	4	155	620
		성록	'00	1	496	496
		자록	'00	1	226	226
꽃사슴	-	자록	'00	2	28	56
계				12		2,413